

『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박마루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』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767호

『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』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『주차장법 시행규칙』의 일부개정으로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해야 함에도

□ 서울시는 현재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.

- 이에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  
구획 설치비율을 정하도록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
조례를 개정함으로써
- 장애인들이 일과 문화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길을  
다닐 때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아무쪼록 장애인들이 노상 및 공영노외 주차장을 편리하게  
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 
참고하셔서
-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